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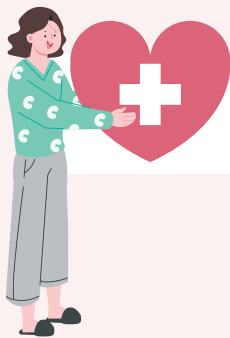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안내서



한림대학교의료원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안내서

한림대학교의료원 사회사업팀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나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하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했나요?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타 지원 제도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치료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나요?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돌봄제도가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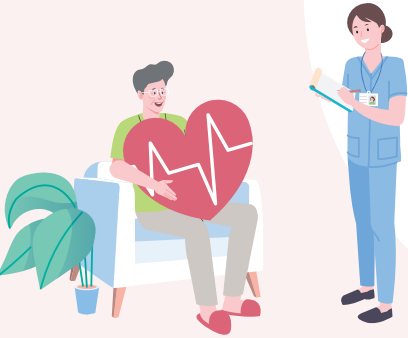
사회사업팀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궁금한가요?



목차



암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안내서

I. 보편적 지원제도

1.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2. 본인부담상한제

06

III. 생계 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11

II. 의료비 지원제도

1.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4.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지원
7. 암환자 소득공제

07

IV. 돌봄 지원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4. 방문건강관리사업
5. 일상돌봄 서비스

13

V. 장애인 지원제도

1. 장애등록절차
2.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 국민연금공단 내 장애연금

16

VI. 기타 지원제도

1. 119 안심콜 서비스
2.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 서울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4. 가족돌봄 휴직/휴가
5.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6. 실업급여(질병)
7. 금연지원센터

17

VIII.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1. 연명의료결정제도
2. 호스피스·완화의료

27

VII. 심리정서 지원

1. 환자 건강 질문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2. 디스트레스 관리하기
3. 암환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4. 암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안내문
5. 의료진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20

IX.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1. 한림대학교의료원 건강정보
2. 한림모바일 앱
3. 암 관련 정보
4. 보건·복지·건강에 대한 정보

28

I. 보편적 지원제도

암으로 진단받은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1.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5년간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급여 본인 부담금)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단,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영수증 예시>

영수증 상단에 [중증질환자]라고 표시되어 있음

항목	급여		③비급여	
	일부본인부담	②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 진료료 이외
	①본인부담	공단부담금		
	5% 부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진료비=①+②+③

| 문의 |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01.01.-12.31.) 건강보험 일부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 일부항목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

신청방법(사후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주소지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서 발송

→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II. 의료비 지원제도

암 치료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국가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1.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단, 자격변동 시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만성질환은 제외. 단,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 상 확인이 가능할 시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중환자실 입원 시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 입원 치료 진행 중 발생한 의료비가 지원에 해당하며, 단기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

단, 위기사유 미 해소 시 1회 연장 가능하며, 동일 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개인 사보험으로 의료비 보장이 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항목: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중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II. 의료비 지원제도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금액

항목	지원금액	비고
수술 및 입원비	300만원 이내	- 비급여 항목 지원
간병비	300만원 이내	- 비급여 의료비 10만원 이상 발생시, 의료비와 함께 간병비 신청 가능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	- 비급여 항목 지원 - 의료비와 별도로 총 10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 가능

※ 개인 사보험으로 의료비 보장이 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퇴원 전 신청이 우선이나,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콜센터 031-120 또는 핫라인 010-4419-7722

4.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만성질환은 제외되나,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개인 사보험으로 의료비 보장이 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항목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료, 상급병실료 등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구청, 주민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II. 의료비 지원제도

5.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진료 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개별심사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분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신청방법** : 입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가능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Ⅱ. 의료비 지원제도

7. 암환자 소득공제

암환자 중 연말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분에게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진료과에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근로자) 및 종합소득세신고(사업자) 신청 가능

|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Ⅲ. 생계 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지원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은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항목	비고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교육지원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외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지원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Ⅲ. 생계 지원제도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①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써 ② 소득·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항목	비고
생계지원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주거지원	임시 거소 및 이에 해당하는 비용,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료, 기숙사비, 교복료 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그외 지원	사례관리비,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비, 전기요금 등 지원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콜센터 031-120 또는 핫라인 010-4419-7722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항목	비고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교육지원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외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지원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구청, 주민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Ⅳ. 돌봄 지원제도

질병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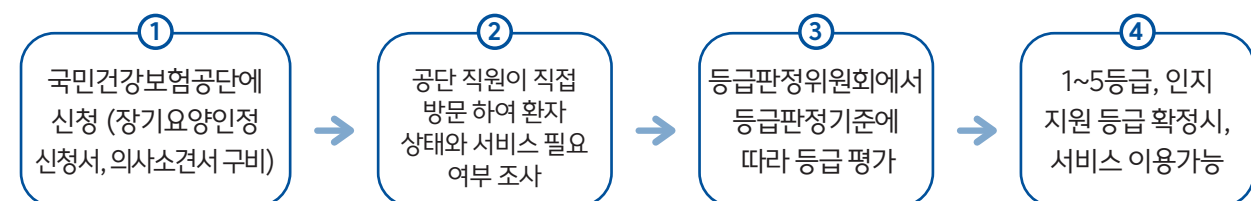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단, 자격변동 시 중단될 수 있음)

급여내용		지원내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을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복지용구 구입비 및 대여비 지원(연 160만원 한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월(229,070원) 지급

■ 신청방법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IV. 돌봄 지원제도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 조사 및 상담을 통해 개인별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주기 등을 결정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시간(24시간, 27시간 중 선택 가능)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며,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나,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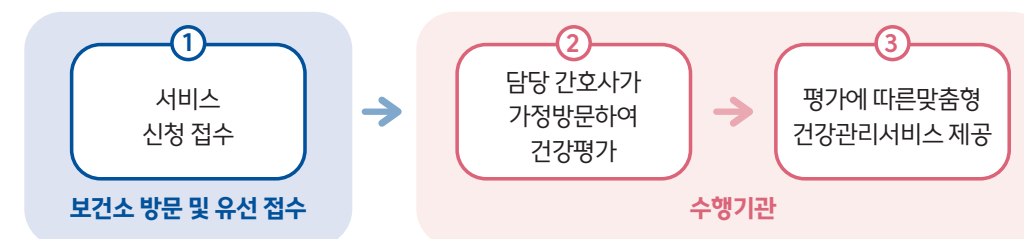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IV. 돌봄 지원제도

4.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혜택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재가암환자 등
-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자(1~5등급), 요양시설입소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상태 스크리닝
 - 직접방문, 전화방문,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지원
- **서비스 제공절차**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5.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부상·고립 등),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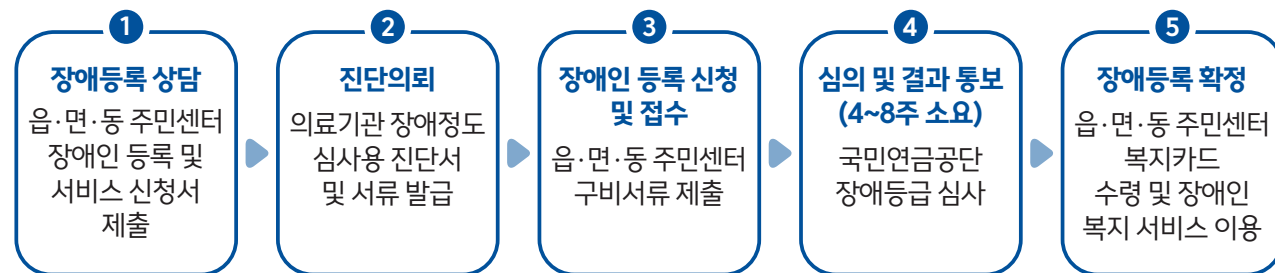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 청년(13-39세)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및 가사지원 - 월 12시간 ~ 72시간 선택)
특화서비스(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 외 6종,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경기 031-271-9228 / 서울 02-2133-7346 / 강원 033-249-3697)

V. 장애인 지원제도

모든 암환자가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1. 장애등록절차



2.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만 6세 ~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 · 가사 ·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4. 국민연금공단 내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VI. 기타 지원제도

1. 119 안심콜 서비스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 신청방법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 접속하여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2.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출퇴근, 외출보조, 병원이용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문의 | 각 시·군·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주요 센터	문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1588-4388, 02-2024-4200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389-5200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462-8253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4428
과천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2-580-8400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80-600-0677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577-2014

VI. 기타 지원제도

3. 서울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 ① 대중교통 이용, 스스로 휠체어 착석이 가능한 ②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 시민에게 ③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하여 접수·수납·약국 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여,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동행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이나,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면제도 가능
- 서비스 예약 : 사전 예약 및 당일 신청 가능, 당일 신청 건의 경우 대기 시간 소요되며 상시대기 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음

| 예약 및 문의 | 콜센터 1533-1179
서울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

4. 가족돌봄 휴직 / 휴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무급) 제도입니다.
※ 휴직 및 휴가에 따라 사용 일수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5.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회사 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VI. 기타 지원제도

6. 실업급여(질병)

질병 등으로 신청인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7. 금연지원센터

각 지역을 대표해서 금연캠프(치료/일반) 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집중적인 금연치료를 받고 싶은 분은 금연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각 병원 금연클리닉(가정의학과) 및 거주지 보건소에서도 금연치료 및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역	센터명	문의
서울	서울금연지원센터	02-592-9030
경기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031-385-9030
강원	강원금연지원센터	033-746-9030

※ 이 외 지역에 대한 정보는 www.nosmk.khepi.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Ⅶ. 심리정서 지원

1. 환자 건강 질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다음은 우울한 정도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항목들은 지난 2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곤란을 겪으셨습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 날을 헤아려서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하세요.

문항		없음	2-6일	7-12일	거의 매일
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 0	☐ 1	☐ 2	☐ 3
2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 0	☐ 1	☐ 2	☐ 3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혹은 너무 많이 잤다.	☐ 0	☐ 1	☐ 2	☐ 3
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 0	☐ 1	☐ 2	☐ 3
5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 0	☐ 1	☐ 2	☐ 3
6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 0	☐ 1	☐ 2	☐ 3
7	내가 잘못 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 0	☐ 1	☐ 2	☐ 3
8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 할 수가 없었다.	☐ 0	☐ 1	☐ 2	☐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 0	☐ 1	☐ 2	☐ 3
각 칸별로 점수를 더해주세요					
총 점		점			

■ 위 문항에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런 문제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사람과 잘 지내는데 지장이 있었습니까?
☐ 전혀 지장없다 ☐ 약간 힘들었다 ☐ 많이 힘들었다 ☐ 매우 많이 힘들었다

Ⅶ. 심리정서 지원

■ 점수별 평가 기준

점수	분류	설명
0-4점	우울 아님	유익한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되지 않습니다.
5-9점	가벼운 우울	다소 경미한 수준의 우울감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기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대처자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사회복지사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문 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0-19점	중간정도의 우울	중간 정도의 우울감이 시사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우울감은 흔히 신체적, 심리적 대처자원을 저하시키며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보다 상세한 평가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7점	심한 우울	심한 우울감이 시사됩니다. 전문기관의 치료적 개입과 평가가 요구됩니다.

※ 본 결과는 정신건강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입니다. 정확한 증상과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 또는 진료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VII. 심리정서 지원

2. 디스트레스 관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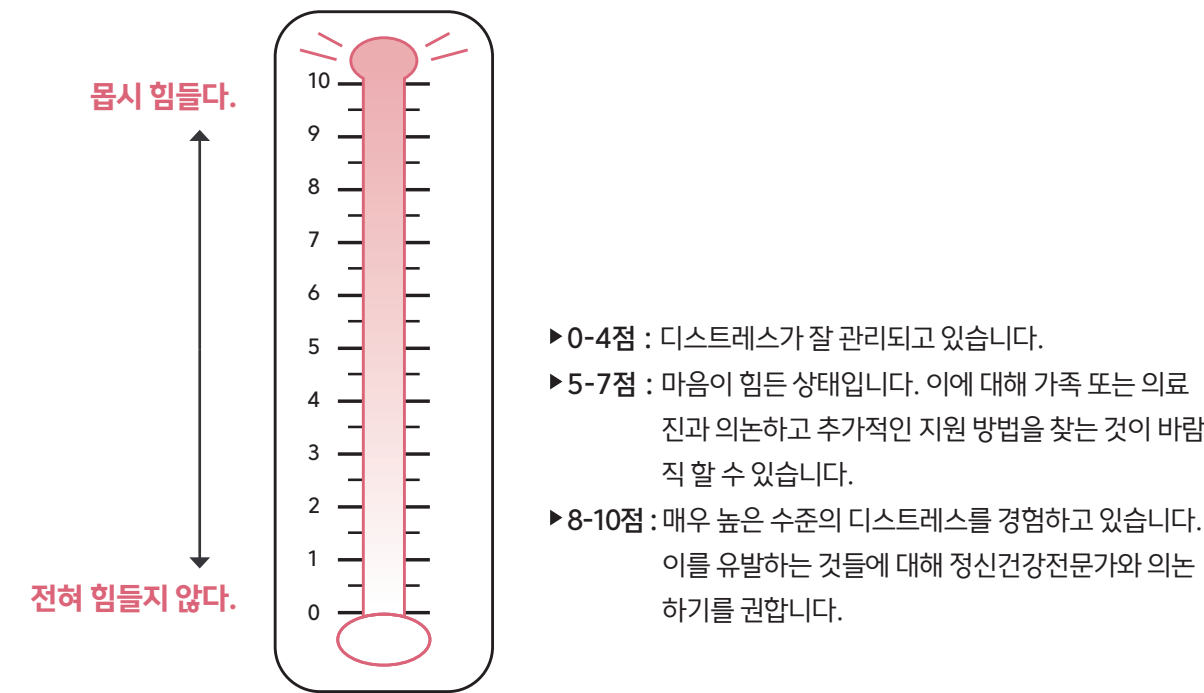
디스트레스(Distress)란 무엇인가요?

암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는 우울, 불안, 무력감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신체적 상태, 일상생활, 대인관계, 영적상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편하고 힘든 감정과 경험으로 암 진단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암을 진단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디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실생활, 영적 등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의 디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요?

1) 먼저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괴로움의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한 온도계 숫자 (최저 0점 ~ 10점)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I. 심리정서 지원

2)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문제가 다음 중에 있었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 항목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신체적 문제	정서적 문제
☐ 통증	☐ 걱정 또는 불안
☐ 수면	☐ 슬픔 또는 우울
☐ 피로	☐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 흡연	☐ 상실감 또는 상실과 관련된 슬픔
☐ 술 또는 과도한 약물 복용	☐ 두려움
☐ 기억력 또는 집중력	☐ 외로움
☐ 성 건강	☐ 분노
☐ 식생활의 변화	☐ 외모의 변화
☐ 신체 능력의 상실 또는 변화	☐ 스스로가 쓸모 없어졌다고 느낌 또는 남에게 짐이 되는 느낌
사회적 문제	
☐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	☐ 일
☐ 자녀와의 관계	☐ 학교
☐ 그 외의 가족과의 관계	☐ 주거문제
☐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 경제적 어려움
☐ 의료진과의 소통	☐ 보험
☐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	☐ 교통수단
☐ 나 자신을 돌보기	☐ 육아
☐ 타인을 돌보기	☐ 충분한 음식 섭취
☐ 치료 결정	☐ 연명의료결정
사회적 · 실생활 문제	
☐ 삶의 의미 또는 목적	☐ 종교적 신념과 암 치료 사이의 갈등
☐ 종교적 믿음이나 신념의 변화	☐ 신과의 관계(기도에 대한 응답, 신이 돌봐줄 거라는 믿음)
☐ 죽음, 임종 또는 사후세계	☐ 식생활을 포함한 종교적/문화적 의식을 하고 싶은 마음

Ⅶ. 심리정서 지원

3) 기타 문제

4) 위에서 체크한 것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어려움) 3가지는 무엇일까요?

걱정되는 순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 우선순위

1)	2)	3)
----	----	----

5) 디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당신이 힘들 때 지지해 주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나만의 활동	신앙/영적인 도움

이 외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Ⅶ. 심리정서 지원

3. 암환자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먼저 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경험자(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같은 암환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시기에 따라 질환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자조모임, 멘토링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사회사업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병원명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대장암 환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함께 걸어 좋은 길”	031-380-4081
	대장암 · 위암 환자를 위한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그램	
강남 성심병원	유방암 환자 자조모임 “살루스”	02-6960-1043
	유방암 환자 멘토링 프로그램	
	암환자를 위한 “힐링댄스” 프로그램	
	암환자를 위한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그램	
동탄 성심병원	유방암 환자를 멘토링 프로그램	031-8086-2154
	유방암 환자를 위한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그램	

4. 암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안내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행한 심리사회적지지를 위한 리플렛을 제공합니다.

암과 우울	디스트레스 슬기롭게 관리하기	의료진과 슬기로운 의사소통
배우자와 의사소통	진행암을 가지고 살아가기	진행암환자 돌보기(보호자용)
암과 성생활(남성/여성)	암환자와 자녀간 의사소통(이별준비과정)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

| 문의 | 한림대학교의료원 사회사업팀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www.cancer.go.kr

VII. 심리정서 지원

5. 의료진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주치의로부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의료진과 대화할 때 준비해야하는 점

- (1) 설명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반드시 면담시간을 예약하거나 회진시간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2) 의료진의 설명은 혼자서 듣지 말고 가족 여럿이 함께 듣습니다.
- (3) 의료진의 설명은 메모를 하며 의료진이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이나 메모도 함께 보관합니다.
- (4) 검사와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해 예비지식을 쌓습니다.
- (5) 환자가 겪는 증상은 빠짐없이 의료진에게 이야기합니다.
- (6) 환자가 치료받는 임상과, 담당교수님, 주치의 이름을 알아두고 진료과 외래 연락처 확인합니다.
- (7)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위해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의료진에게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세요.

- (1) 이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 (2) 약은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하나요?
- (3)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 (4)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5) 치료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 (6) 퇴원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7) 퇴원 후 언제 또는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와야 하나요?

VIII.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 · 완화의료

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환자와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 등록 된 의료기관

| 문의 | 한림대학교의료원 사회사업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www.lst.go.kr

2. 호스피스 · 완화의료

호스피스 · 완화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이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유형 : ① 입원형 호스피스 ② 가정형 호스피스 ③ 자문형 호스피스 ④ 소아청소년완화의료

■ 서비스 이용방법



| 문의 | 한림대학교의료원 사회사업팀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 www.hospice.go.kr

IX.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1. 한림대학교의료원 건강정보

1) 한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hallym.or.kr>)

▶ 건강백과사전, 영상자료실



2) 한림대학교의료원 SNS

▶ 유튜브  한림대학교의료원

▶ 블로그 https://blog.naver.com/humc_health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lobalHallym>

3) 쓱쓱티비  쓱쓱티비

2. 한림모바일 앱

고객가이드 앱



복약알리미 앱



| APP 설치 방법 |

- 안드로이드폰 : Google Play 스토어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으로 검색 후 설치
- 아이폰 : App Store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 으로 검색 후 설치

IX.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3. 암 관련 정보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www.cancer.go.kr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577-9740	www.cancer.go.kr/survivor
(사)한국혈액암협회	02-3432-0807	www.kbdca.or.kr
한국유방건강재단	02-6040-3900	www.kbcf.or.kr

4. 보건·복지·건강에 대한 정보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복지로	129	www.bokjiro.go.kr
정부24	1588-2188	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www.nts.go.kr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1350.moel.go.kr/home/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www.lst.go.kr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	www.hospice.go.kr

나의 질환과 상황에 맞는 맞춤 복지정보 추천받는 방법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돌봄 서비스
안전한 퇴원준비 # 건강관리 # 한번에 추천받아요!



01 한림대학교의료원 고객가이드앱 설치



안드로이드



아이폰

02 한림대학교의료원 고객가이드앱 로그인

03 맞춤형 의료사회복지 플랫폼 선택

04 도움이 필요한 부분 선택 ▶ 추천 받기